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

통계정보보고서

2022. 3.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2.3.11.



국무조정실

〈차 례〉

I. 통계개요	1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4
III. 통계설계	5
IV. 자료수집	14
V. 자료처리	17
VI.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21
VII.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34
VIII. 통계기반 및 개선	36
IX. 참고문헌	37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공적개발원조실적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개요

1. 통계명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 (승인번호 : 102002호)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근거하여 승인된 통계
 - 승인번호 102002호(승인일자 : 2003. 4. 12.)
-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는 ODA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관리와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1조(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를 근거로 수행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 통계 사업의 결과로 작성됨.

3. 작성방법

- 보고체계
 - 공적개발원조 수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자료 등록) → 국무조정실(접수) → 공적개발원조 중앙행정기관, 소속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누락사항 조사, 자료 취합 및 정제) → 국무조정실(통계자료 최종 취합 및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자료 작성)
- 국무조정실 “ODA 통합정보포털”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수행 부처·기관의 공적개발원조사업 정보를 구득하여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 및 보도자료 작성

4. 통계작성기관

- 국무조정실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잠정) : 1년
 -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확정) : 1년
- 공표주기
 -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잠정) : 1년
 -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확정) : 1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ODA 통계 작성·제출 주요 절차

	진행 단계	잠정통계	확정통계
I	· ODA 통계작성지침 개정 · ODA 통계보고시스템 개편	1월말	5월말
II	· ODA 실적자료 제출 요청 공문 송부	2월초	6월초
III	· 부처/기관별 ODA 실적자료 입력·제출 · ODA 통계설명회 개최	2월중	6월중
IV	· OOF, PF 등 자금 흐름 집계	-	6월중
V	· ODA 실적자료 검증	2월말	6월말
VI	· ODA 통계 보고서 작성·제출	3월초	7월초

7. 통계연혁

□ 개발 배경

-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의 공공 및 민간부문이 공여하는 재원과 개도국의 수원 및 채무에 관한 분석 정보 및 원조정책 및 원조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주요 연혁

- 1995년 5월 : 재정경제원 1994년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 최초 작성
- 1996년 6월 : 한국수출입은행 과거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1987년~1993년) 일괄 작성 및 OECD 보고
- 2003년 4월 : 통계작성 승인
- 2006년 : ODA 통계보고시스템 구축·운영
- 2010년 7월 :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발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통계 주관기관 변경(기재부 ->국무조정실)
- 2010년 10월 : 제 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 발효(10.10.25)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공적개발원조 통계전담기관으로 지정
- 2010년 : 국제개발통계시스템 구축·운영
- 2011년 : ODA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2012년 : ODA 모니터링시스템 개편(통계조회시스템 개발 등)
- 2013년 : ODA 모니터링·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2014년 : ODA 모니터링·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 통합시스템 개선(연계사업 정보 조회 화면 개설 등)
- 2014년 : ODA 모니터링·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 통합시스템 개선(사업정보 수정, 삭제 기능 개선 등)
- 2017년 : ODA 모니터링·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 통합시스템 개편(통계 조회화면 개선, 부처 간 정보공유 기능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 2020년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20.5.2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ODA 통합정보포털 구축·운영 및 통계 취합 담당

II.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의 공공 및 민간부문이 공여하는 재원과 개도국의 수원 및 채무에 관한 분석 정보 및 원조정책 및 원조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매년 2회에 걸쳐 우리나라 전체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 국가 대외원조 현황을 공유하고 OECD DAC에 제출, DAC은 이를 활용하여 공여국들의 원조노력과 정책 방향 관련 보고서 발간
 - 3월 잠정통계, 7월 확정통계 등 2회 통계 보고
-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 등 개발도상국 앞 자금흐름에 대한 통계보고, 개발협력 정책 및 제도 수립에 활용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분야 종사자의 연구목적 및 정책 결정 등에 활용
 - OECD DAC 통계는 국제적으로 ODA 통계에서 유일하게 신뢰성 있는 수치로 평가되며, DAC은 매년 이를 활용하여 개발협력 연차보고서를 작성
 - 동 통계는 OECD 통계조회 사이트(OECD Stat)에 공개되며,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학계의 국제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정부부처, 기관 등은 공적개발원조 실적 분석 및 국가간 비교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

3. 이용자 의견수렴

- ODA 통합정보포털 구축 시 이용자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및 반영 내용
 - 모니터링 및 통계시스템 단일화
 - ODA 사업단계 일관성 제고
 -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 구분에 따른 권한 부여 등
- '17년 OECD DAC의 동료검토에서 ODA 통계에 대해 DAC 통계지침에 따른 표준화된 양식으로 적기에 보고되고 있다고 평가
 - 온라인 ODA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 기관들이 표준화된 양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통해 일관성 있게 사업 품질 및 성과 관리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평가

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여주체 : 공여국의 공공기관(정부부처 포함) 또는 동 기관의 집행기관
 - 상업차관, 무역신용,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부문에 의한 자금 이전과 NGO 등 민간단체에 의한 자발적 지원은 제외
- 공여대상 : DAC가 인정하는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
 - DAC은 ODA 적격국가 목록을 3년마다, 국제기구를 매년 결정하고 있음
- 공여목적 :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원지원의 주요 목적이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
- 공여조건 : 수원국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상업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보다 유리한 양허적(concessional) 조건으로 제공
- 지원조건 : 수원국의 소득그룹별로 정해진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지원금액과 비교하여 최소증여율 이상이 되어야 공적개발원조로 인정
 - 증여율은 거래의 지원조건(이자율, 거치기간, 만기)을 재무적으로 평가하여 차관액과 차관 원리금 현재가치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무상으로 지원되는 비중을 말함

□ 기타공적재원(OOF: Other Official Flows)

- 기타공적재원은 공적개발원조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다음의 공적거래를 의미함
 - 수원국에 대한 증여에 해당되지만 명목적 또는 실질적으로 재원의 목적이 상업적인 경우
 - 수원국 개발이 주 목적이지만 증여율이 25%에 미달할 경우
 - 공여국 내 민간 수출자 앞으로 지원한 공공부문 대출
 - 정부 및 중앙은행이 국제기구로부터 시장금리부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부문이 수원국에 지원하는 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
 - 민간부문의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는 경우
 - 공공부문의 직접 또는 포트폴리오 투자 중 ODA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공공부문이 비양허적 조건으로 부담하는 비 ODA 채무 재조정(reorganisation) 및 군사 채무 면제(forgiveness)

□ 공적수출신용(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자국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을 위한 상업적 목적의 자금을 지원한 경우

□ 양자간 ODA(Bilateral ODA)

- 양자간(Bilateral) 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간 직접거래를 의미하며, 원조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NGO에 대한 지원, 공여국내에서 거래가 발생하는 개발원조 관련 기타비용

(개발원조에 대한 인식증진, 채무재조정, 행정비용 등)을 포함

- 프로젝트 원조 : 특정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 공여를 통해 수원국의 유형자산 (physical capital)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
- 기술협력 : 수원국 국민의 지식, 기능,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 등의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한 공여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개발조사, 전문가·봉사자 파견, 기술협력 관련 물자지원 등을 포함

□ 다자간 ODA(Multilateral ODA)

- 다자간(Multilateral) 원조는 공여국이 국제기구 앞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간접 원조방식으로, OECD/DAC에서 정한 특정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출자와 동 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을 말함
 - 국제기구는 각국 정부가 회원이 되며, 개도국의 개발 사업지원을 주요 목적 또는 일부 목적으로 하고, 출자·출연된 재원은 공여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사업재원을 국제기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증여 및 차관

- 증여(Grants)는 수원국이 채무상환의 법적구속을 받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으로서 채무탕감, NGO에 대한 지원, 공여국내 개발관련 행정비용을 포함
- 차관(Loans)은 수원국이 채무상환의 법적의무를 지는 현금 또는 현물 지원으로서 확정된 상환스케줄에 따라 수원국이 재원을 상환하게 되며, 증여율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공적재원(OOF)으로 분류함
 - 수원국 및 국제기구가 공여국 앞 지불한 공공차관에 대한 이자는 ODA 통계 재원흐름에 포함되지 않고 메모항목으로 기록

□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 TC)

- 기술협력은 전문가 파견, 연수생 교육, 연구활동 지원과 같이 수원국의 인적자본을 증가 시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 순수한 인적자본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 기술협력(FTC)과 유형자산 확대를 지원하는 투자관련 기술협력(IRTC)로 구분
 - 독립적 기술협력(Free-standing technical cooperation)은 수원국의 지식수준, 기술, 노하우,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부존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 투자관련 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설계, 사업실시, 감리 등을 통해 수원국의 유형자산 증가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컨설팅, 개발 사업 노하우 전수, 수원국의 개발사업 담당자에 대한 지원 등

□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 개발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비영리단체로서 재원이 주로 공여국에서 조달되고,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임시로 조직된 민간단체를 포함하며, 종교단체의 개발 및 복지관련 지출도 포함할 수 있음

- 재원이 여러 국가에서 조달되는 경우 국제 NGO로 분류

□ 국제기준 또는 국내기준과의 비교

-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 상 주요 개념 및 보고항목별 정의는 OECD DAC에서 발표한 통계작성지침을 다르고 있으며, 한국 외 여타 OECD 회원국 또한 동일한 기준의 통계 작성

1-2. 적용 분류체계

□ 국제기준 적용

-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는 OECD DAC에서 발표한 통계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 원조유형 분류체계와 개념

구분	원조유형
예산지원	일반 예산지원 분야별 예산지원
NGO, PPP 지원 및 프로그램 원조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PPP:Public-Private Partnerships) 지원 다자기구(Multilateral Institution) 지원 국제기구(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합동기금(Basket funds/pooled funding) 지원
프로젝트 원조	프로젝트 원조 (개발조사(F/S) 포함)
기술협력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기타 기술협력 (세미나/워크샵 개최, 개발조사(F/S), 기타(리서치) 등)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연수생 교육기관 앞 지원 등
채무구제	채무구제
행정비용	개발협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
기타 공여국내 지출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 공여국내 난민지원 - 미배분 공여국내 난민지원 - 난민인정까지의 비용 공여국내 난민지원 - 난민인정 거부까지의 비용 공여국내 난민지원 - 난민인정 이후의 비용

1) 프로그램 원조(Program aid)

- 프로그램 원조는 재원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수원국의 일반적인 개발계획(일반 프로그램 원조) 및 특정분야 개발계획(분야별 프로그램 원조) 달성을 지원하는 원조 유형임
- 주로 수원국의 거시경제 정책 및 분야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원됨

① 일반 프로그램 원조(General program assistance)

- 일반예산지원(General budget support)
 - 구조조정, 빈곤감소 전략 등 수원국의 거시경제 개혁 추진 지원금을 포함한 수원국 정부예산 지원 (수원국 예산 사용절차에 따라 관리됨)
 - 특정 목적을 위해 배정되어 특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수원국 국고로 송금된 공여금은 제외
- 국제수지 재정지원(Balance-of-payments support)
- 수입지원(Import support)
- 자본재 및 물자지원(Financing of capital goods and commodities)

② 분야별 프로그램 원조(Sector program assistance)

- 프로그램 원조의 개념 하에서 공여국간 조율을 통해 수원국의 특정 산업 및 분야(농업, 교육, 교통 등)를 지원하기 위한 원조
- 분야별 예산지원(Sector budget support)
 -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의 정책협의 초점이 전반적인 정책 및 예산 우선순위가 아닌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춤
- 국제기구(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Contribution to specific-purpose programmes and funds managed by international organisations(multilateral, INGO))
 - OECD/DAC의 프로그램 원조 분류기준의 4가지 요건을 만족할 때 프로그램 원조로 분류 가능
 - 국제기구가 조성한 특정 프로그램과 분야별, 주제별, 지역별 기금에 대한 양자 지원
 - 국제기구의 요청에 의한 긴급구호 지원
- 합동기금 지원 (Basket funds/pooled funding)
 - OECD/DAC의 프로그램 원조 분류기준의 4가지 요건을 만족할 때 프로그램 원조로 분류 가능
 - 자율계정에 기금을 지원하고 이를 타 공여국 및 수원국과 합동으로 관리. 계정은 특정 목적, 집행방법, 회계구조를 가지며 한정된 기간 안에 사용됨
 - 모든 공여국이 공동 문서작성, 공동 금융계약서, 공동 보고/회계 절차를 공유하는 특징
 - 국제기구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되는 기금에의 지원은 B03코드로 분류

2) 프로젝트 원조(Investment Project aid)

- 특정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자금 공여를 통해 수원국의 유형자산(physical capital)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

- 이러한 프로젝트 원조는 수원국이 지출하는 현지비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며,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투자관련 기술협력**(Investment-related technical co-operation)은 프로젝트 원조로 분류
- 개별 프로젝트 원조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는 프로젝트 원조로 보고
- NGO/다자기구를 통한 원조 또한 프로젝트 원조로 분류 가능하고, 공여국의 프로젝트/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NGO/다자기구로의 집행과 특정 NGO 프로젝트 지원도 포함
 - 그러나, NGO/다자기구 예산에 대한 지원(core funding) 지원과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특정목적 기금에 대한 지원은 B항목으로 분류
- 지분 투자의 경우, 인도적 지원 및 NGO를 통한 지원은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프로젝트 원조로 분류

3) NGO에 대한 지원(Core support to NGOs)

- ODA 대상 국가에 대한 **개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국내 NGO 및 국제 NGO에 대한 지원 (NGO가 개발한 프로그램/활동을 NGO의 권한/책임으로 사용함)
- NGO 유형
 - 국내 NGO : 공여국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자금이 주로 공여국에서 조달되는 민간 비영리단체(협동조합 및 무역협회 등 포함)
 - 국제 NGO : 운영자금이 국제적으로 조달되는 민간 비영리단체
 - 특정목적(재해 및 기아)을 위해 설립된 임시 단체
 - 대개도국 개발 및 복지(welfare)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종교단체

4)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Core support to PPP)

- 특정 개발문제를 다루기 위해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 및 기업 등이 체결한 공동협약의 일종인 공공-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기부금
- 본 파트너십의 특징은 국제기구와 국제NGO의 중간형태의 최고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국제기구와 같이 이사회 구성원 일부는 정부 및 공공부문을 대표하고 국제NGO와 같이 구성원 일부는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를 대표함

5)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 TC)

- 기술협력은 수원국 국민의 지식, 기능,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능력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여국 정부의 재정지원임
- 수원국 국민의 **지적자본(human intellectual capital)** 및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능력 증가**를 목적으로 주로 교육 및 훈련 등 인적 협력 수단을 통해 수원국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기술협력(**Free-standing TC**)을 지칭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투자관련 기

술협력과는 구분됨

(1)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① 전문가 파견

- 개별국가 파견 : 수원국 요청으로 의사, 교사, 기술전문가, 인턴 등을 파견하여 교육, 훈련 등을 지원
- 국제기구 파견(단순 행정업무를 위한 파견 및 초급전문관(JPO) 포함) : 국제 원조기관에 파견된 내국인에 대한 제비용(인건비 및 체재비) 계상

② 자원봉사자 파견

- 자원봉사자란 일부 또는 전적으로 공적 재정지원을 받거나 공공부문에서 관리하는 개도국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일하는 자를 말함

(2) 기타 기술협력

① 기술협력과 관련된 물자 지원

- 독립적인 기술협력 사업과 직접 연관된 장비·기자재 등 제공

② 개도국 내 장학금 지원

③ 개발관련 사회 및 문화사업

- 공여국이 수원국 국민의 사회·문화 개발 도모를 위한 기본 시설을 지원하거나 관련 연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비용은 ODA로 분류가능(다만, 단순 일회성 행사인 사회·문화사업들은 ODA로 인정되지 않음)

④ 개발문제 연구비 지원

- 공여국(한국) 또는 기타지역에서 개도국 문제연구(예: 열대질병, 농업 등)를 위해 지출된 비용
 - 개도국 경제성장 및 복리증진이 주목적인 기관이 수행한 연구
 - 일반기관(general purpose institution)이 공적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개도국 개발관련 용역연구

⑤ 세미나·워크숍 개최

- 공공기관 혹은 일반기관이 공적기관의 지원을 받아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를 위해 지출한 비용

(3)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①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 직접비용(E01) : 공여국 내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앞 직접 지급된 장학금(학비 및 생활비)
- 간접비용(E02) : 공여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에 따라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에 소요된 간접비용(연수생 교육기관 앞으로 지원되는 예산 중 개별 장학금 아닌 학생들 앞 학자금)

- 간접비용의 범위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수준에 대한 지원, 가능하면 각 학과별로 별도의 계산 산출, 유지보수비 및 소모성 기자재에 대한 지출

6) 채무구제(Debt relief)

- 수원국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원금 탕감뿐만 아니라 이자 탕감도 포함됨
 - 이외에도 수원국의 채무를 완화해 주는 다양한 형태의 채무구제 조치를 모두 포함함 (제3자에 대한 채무 대지급, 채무 전환, 채무 바이백 등)

7) 개발협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s)

- 공여국내 원조담당 및 집행기관의 행정비용
 - 원조사업 전담기관(재정경제부 및 외교통상부)의 행정비용
 - 원조사업 수행기관(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비용
- 개도국내 원조업무관련 행정비용
 - 원조 전담 또는 일부 수행 외교관 비용
 - 원조사업 수행을 위해 지출된 건물 및 장비 비용

8) 기타 공여국내 지출(Other in-donor expenditures)

- 개발에 대한 인식 확산(Development Awareness) : 공여국 공공부문이 공여국내 개발협력 인식제고 및 지지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공여국 원조정책에 대한 특별강연, 교육, 자료제공 등
 - 개발협력에 대한 연차보고서 및 안내책자(브로셔 등) 제작
- 공여국내 난민지원(Refugees in donor countries) : 공여국내 난민의 첫 1년간 상주를 위한 공적부문 지출

9) 혼합신용 중 무상지원(Grants in associated financing packages)

- 수원국에 제공되는 혼합신용 중 무상원조(grants) 부분
 - 혼합신용의 양허적 요소가 무상원조로 제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혼합신용은 Mixed Credit, Mixed Financing, Joint Financing, Parallel Financing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양허적 요소(concessional component)와 비양허적 요소(non-concessional component)가 결합되어 제공되는 금융패키지로 다음의 특징을 가짐
 -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in law or in fact) 양허적 요소가 비양허적 요소와 연계되어 있으며,
 - 금융패키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타이드 조건으로 공여되고,

- 양허적 요소의 가용성이 非양허적 요소의 수용 여부에 연결되어 있음

10) 개발식량원조(Developmental Food Aid)

- 식량의 공급 및 유통, 식량 원조를 위한 현금지원, 비료나 씨 등과 같은 중간단계의 생산품 공급 등이 해당되며,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식량원조는 제외
- 긴급식량원조(Emergency food aid)는 인도적 지원(Humanitarian Aid)에 해당

11) 인도적지원(Humanitarian Aid)

-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및 전쟁, 질병 발생 등의 긴급상황 시 생명구조, 고통경감, 생명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지원으로 본 항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긴급상황(Emergency)'의 발생이 전제
- 긴급구호 : 인공 또는 자연재해에 따른 물품 및 현금지원, 식량지원, 의료단 등의 파견 등
- 재건구호 :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재건활동으로 일반적인 개발목표를 위한 재건활동은 제외
- 재난방지 및 준비 : 재해경감활동,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활동

12) 기 타

- 분쟁해소 평화유지 활동 등(Post-conflict Peace-building)
 - 국지적 분쟁해소를 위한 평화유지활동 관련 원조로서 치안제도 관리 및 개선, 민간주도의 분쟁예방, 군인의 민간복귀 및 무장해제, 지뢰제거, 소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ODA로 인정 가능함

1-3. 보고양식 구성

□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보고양식 활용

- DAC 통계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보고양식이 조금씩 수정되며, DAC은 확정된 보고양식을 매 통계자료 요청시 송부함.
- DAC 회원국 통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통계작업반 회의(매년 2회 개최)에서 통계기준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보고양식을 검토, 확정함.

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공적개발원조 실적 통계는 국가간 비교가능성 확보 및 OECD 회원국의 의무인 ODA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OECD DAC에서 정한 보고양식에 따름

- DAC 통계기준 변경에 따라 매년 보고양식이 조금씩 수정되며, DAC은 확정된 보고양식을 매 통계자료 요청시 송부함.
- DAC 회원국 통계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통계작업반 회의(매년 2회 개최)에서 통계기준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보고양식을 검토, 확정함.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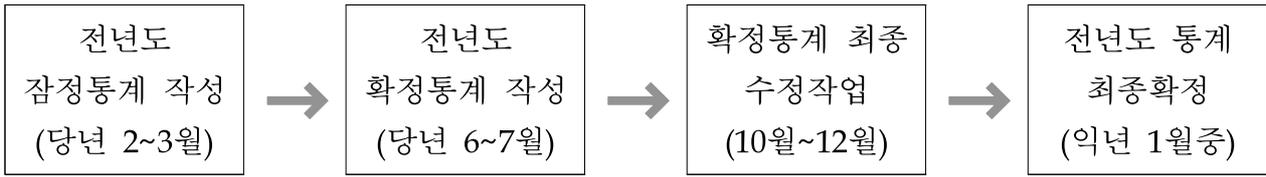
- 통계 작성대상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기관
 - 통계 작성대상은 보고대상 전체이며, ODA 사업의 수행주체로서 통계작성 목적에 적합한 대상임.
 - 작성기간 중 통계작성대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작성대상인 기관의 명칭이 바뀌는 경우에는 시스템 상 변경된 명칭 즉시 반영함.

3. 통계작성 개편

- 작성 항목이나 분류기준 등 통계 개편 시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며, 이를 작성 기관 앞 입력 요청 공문 송부 시 별도 안내
 - OECD DAC은 통계 개편 시 이를 통계 작성지침에 반영하며, 공식 문서를 통해 개편된 내용을 기술함.
 - 통계 개편은 DAC 회원국 통계작성반에서 각국 ODA 통계 담당자들 간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국무조정실은 ODA 통계 전담부처로서 동 회의를 참석하고 있음.
 - 국무조정실은 통계 개편 사항을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며, 주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하여 통계 입력 담당자들에 이를 교육함. 또한 통계 입력 공문에 개편된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입력 담당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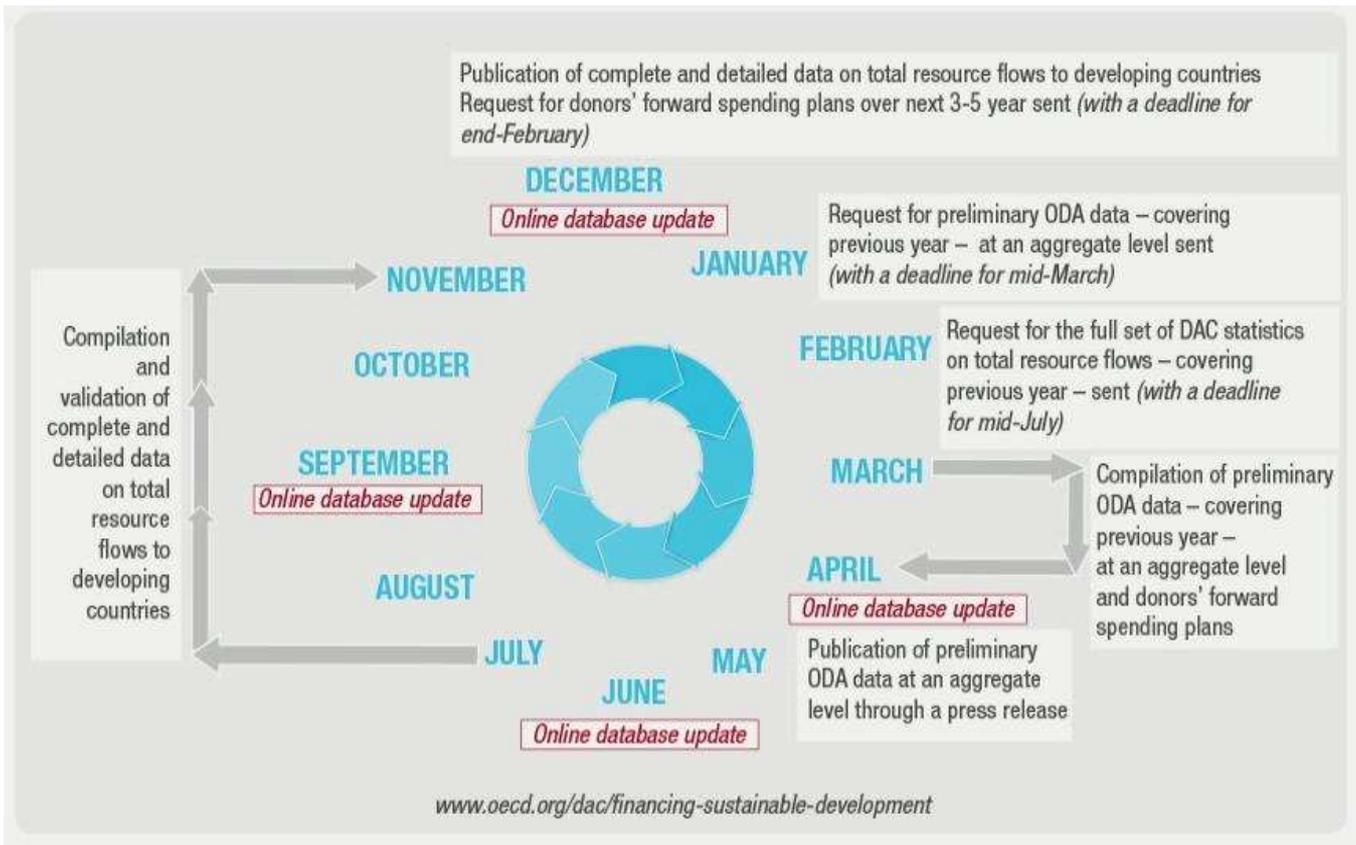
IV.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ODA 통계 취합과정은 기본적으로 OECD DAC의 통계 취합 스케줄과 동일

- ① 국무조정실은 2월~3월초 ODA 통합정보포털을 통해 각 기관 및 부처별 사업실적을 취합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3월 15일까지 OECD에 잠정통계를 보고한다.
- ② OECD 통계작성반은 6월에 실시하는 공식회의를 통하여 당해 연도의 지침을 확정하며, 국무조정실은 정확한 통계 입력을 위해 6월 회의 직후 통계보고시스템을 수정하여 각 기관 및 부처에 3월 취합한 잠정통계의 수정 및 확정을 요청한다.
- ③ 국무조정실은 7월 15일까지 확정통계를 작성하여 OECD에 송부하며, OECD는 통계자료를 점검한 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연도 연말까지 수차례 자료 보정 작업을 진행하여 재송부를 요청한다.
- ④ OECD는 직전년도 ODA 통계 확정치를 그 다음해 1월 최종 발표한다.



- 국무조정실은 아래의 역할 수행
 - ODA 통계 지침 작성 및 배포
 - OECD 앞 제출 통계의 취합
 - 각 제출기관별 보고된 ODA 자료의 확인 및 검증
 - OECD 앞 보고양식 작성과 송부
 - OECD DAC 통계작성반 회의 참석 및 논의사항 대응
 - ODA 통계 수정작업 및 최종제출

□ 최초 보고자(등록자) 단계에서 전산입력, 오류점검, 집계 자료 등의 과정

- ① 국개위 통계자료 입력 공문요청 및 시스템 상 통계입력기간, 입력방법안내서(FAQ 포함) 게시
- ② 기관별 담당자 통계시스템 접속 및 해당기관 ODA 사업 정보 전산 입력
- ③ 최초 입력 시 미기재 입력 및 오류입력 항목을 검증하는 절차가 존재하며, 오류발생시 팝업으로 알림. 오류가 해결 되어야만 저장처리 가능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매년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ODA 통계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국무조정실은 ODA 통계 제출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ODA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여 통계 작성지침에 대해 변경된 내용과 입력시스템 활용방법, 작성 시 유의점 등을 안내하고 있음.
- 또한 ODA 통계 입력을 위한 시스템 이용가이드 책자를 매년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동 가이드에는 입력방법 및 예시, FAQ,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

□ 보고단계에 대한 의문(오류)사항 발생시 조치 방법

- 보고 양식이 변경된 경우, 부처 및 기관 앞 공문발송을 통해 보고 양식 변경을 안내하고 통계작성 담당자 대상 교육 시 변경내용을 상세 설명하고 있음.
- 입력시스템 내 이용가이드를 제공하며, 주로 발생하는 의문 사항을 FAQ로 제공
- 공문에 시스템 운영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여, 의문사항 및 오류 개별 대응

3. 현장관리

□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 시 제출기관 담당자 앞 제출기한 재안내 및 입력 촉구

- 입력기한 내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승인한 해당연도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자료 미기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통계시스템과 별도로 ODA 모니터링 시스템 상 등록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추가 자료 입력 안내

□ ODA 통합정보포털 이용 가이드 내 입력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통계 시스템 내 주요 질의 응답 자료 제공 및 오류 대응

- 입력시스템 내 이용가이드를 제공하며, 주로 발생하는 의문 사항을 FAQ로 제공
- 공문에 시스템 운영 담당자 정보를 제공하여, 의문사항 및 오류를 개별 대응하는 한편, 해당 입력회차 자료 입력시 자주 질의되는 사항은 공지사항 및 별도 안내창으로 제공

□ 자료 미기재 및 부실 기재 처리 방식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승인한 해당연도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자료 미기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며, 통계시스템과 별도로 ODA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매분기 부처 및 기관의 ODA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바 해당 시스템 입력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자료 미기재 및 부실 기재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 수정요청

V.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보고결과 자료의 코딩(부호화) 방법, 내용, 코드체계

○ 통계사업정보 자료 구조

No.	결련한글명	정의
1	기준년도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는 년도
2	공적개발원조사업번호	ODA사업등록시 채번되는 고유번호
3	공적개발원조사업구분코드	ODA사업이 약정 신규구분을 나타내는 코드
4	유무상구분코드	ODA사업의유상,무상구분코드
5	공적개발원조국가코드	ODA사업의 원조국가 코드
6	공적개발원조지원국가기관코드	ODA사업을 담당하는 원조국가의 기관 코드
7	공적개발원조기관코드	ODA사업을 등록관리하는 기관의 코드
8	시행기관명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명칭
9	시행기관한글명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한글 명명
10	공적개발원조채널코드	ODA사업의 시행기관 채널을 구분하는 코드
11	공적개발원조구분코드	ODA사업의 다자양자 구분을 나타내는 코드
12	공적개발원조자금구분코드	ODA사업의 자금 성격을 나타내는 코드
13	공적개발원조지원자금형태코드	ODA사업의 지원자금 형태를 구분하는 코드
14	공적개발원조사업한글명	ODA사업의 한글명칭
15	공적개발원조사업영문명	ODA사업의 영문명칭
16	사업시작예정일자	사업이 시작될것으로 예정된 일자(예:20161101)
17	사업완료예정일자	사업이 완료될것으로 예정된 일자(예:20161101)
18	사업설명	ODA사업에 대한 상세설명
19	사업한글설명	ODA사업에 대한 상세 설명(한글)
20	성평등공적개발원조정책목표구분코드	ODA사업의 목표정책중 성평등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21	환경지원공적개발원조정책목표구분코드	ODA사업의 목표정책중 환경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22	참여개발공적개발원조정책목표구분코드	ODA사업의 목표정책중 참여형개발, 지배구조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23	기술협력여부	ODA사업이 기술협력인지 여부
24	기술협력상세구분코드	ODA사업에서 기술협력 종류를 구분하는 코드
25	섹터프로그램여부	ODA사업이 섹터프로그램 형태인지 여부
26	투자사업여부	ODA사업이 투자사업인지 여부
27	혼합신용여부	ODA사업이 혼합신용형태 인지 여부
28	생물다양성리오마커구분코드	ODA사업의 리오환경협약 생물다양성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29	기후변화완화리오마커구분코드	ODA사업의 리오환경협약 기후변화완화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30	기후변화적응리오마커구분코드	ODA사업의 리오환경협약 기후변화적응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31	사막화리오마커구분코드	ODA사업의 리오환경협약 사막화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32	무역개발공적개발원조정책목표구분코드	ODA사업의 목표정책중 무역개발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33	공적개발원조모자보건증진구분코드	ODA사업의 목표정책중 모자보건증진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34	사업승인일자	사업의 승인 일자
35	상환방식구분코드	ODA사업의 상환방식을 구분하는 코드
36	연간상환횟수코드	ODA사업의 상환횟수를 구분하는 코드
37	약정일자	약정 년월일
38	약정이자율	약정 시 부담하기로 약속된 이자율
39	약정금액	약정한 금액
40	최초상환일자	최초로 상환한 년월일
41	최종상환일자	마지막으로 상환한 년월일
42	수취이자금액	수취한 이자 금액
43	원금잔액	원금 잔액 금액
44	연체원금금액	특별관리대상채권 중에 연체원금금액
45	연체이자금액	연체 계산이자 금액
46	익년상환원금금액	익년에 상환해야 되는 원금 금액
47	익년지불이자금액	익년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 금액
48	기준통화코드	기준 통화코드 (예) EUR:유로, USD:미국 달러 등
49	공적개발원조유형코드	ODA사업의 유형을 분류하는 코드
50	공적개발원조유형상세코드	ODA사업의 세부유형을 분류하는 코드
51	증여등가액	당해기준과거증여한가액의가치금액
52	증여등가액미화금액	당해기준 과거 증여한 가액의 가치금액(미화)
53	증여율	증여등가액 계산에 사용되는 증여 비율
54	공적개발원조사업데이터구분코드	ODA사업의 등록 상태를 구분하는 코드
55	공적개발원조사업등록상태코드	ODA사업의 등록 상태를 구분하는 코드
56	입력자로그인ID	사업을 입력한 자의 로그인ID
57	입력자명	입력자의 명
58	입력일자	입력 년월일
59	업로드일련번호	업로드 등록시 부여되는 고유식별번호
60	통계이관일련번호	통계로 이관시 채번되는 일련번호
61	통계거래구분코드	BI 통계용 데이터 DOF_BIZ.TR_KIND
62	통계공적개발원조분야코드	BI 통계용 데이터 DOF_BIZ.SEC_SML_C, 분야소코드 NGO 분할 관리
63	삭제여부	거래삭제(취소) 여부 (예: N(정상), Y(취소))
64	최초등록일시	[시스템속성]레코드가 최초로 Insert될 때의 일시. YYYY-MM-DD HH24:MI:SS
65	최초등록행번	[시스템속성]레코드가 최초로 Insert될 때의 사원의 행번
66	최초등록프로그램ID	[시스템속성]레코드가 최초로 Insert될 때의 프로그램ID
67	최종변경일시	[시스템속성]레코드가 Update될 때의 일시. YYYY-MM-DD HH24:MI:SS
68	최종변경행번	[시스템속성]레코드가 Update될 때의 사원의 행번
69	최종변경프로그램ID	[시스템속성]레코드가 Update될 때의 프로그램ID
70	일련번호	일련번호
71	회수금액	회수한 금액
72	할인율	할인 비율
73	상환기간년수	상환기간에 대한 년수
74	거치기간년수	거치기간의 년수
75	채무구제여부	채무구제여부
76	제2이자율	이자율 2
77	레버리징 메카니즘	레버리징 메카니즘
78	민간재원 동원 금액	민간재원 동원 금액

79	동원된 자금 출처	동원된 자금 출처
80	프로젝트원조 전문가 파견 비용 약정액	프로젝트원조 전문가 파견 비용 약정액
81	프로젝트원조 전문가 파견 비용 지출액	프로젝트원조 전문가 파견 비용 지출액
82	재난위험경감공적원조정책목표구분코드	ODA사업의 목표정책 중 재난위험경감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83	장애인권리공적원조정책목표구분코드	ODA사업의 목표정책 중 장애인권리 분야에 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코드

□ 보고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ODA 통합정보포털 내 통계정보 관리 - 통계 관리 화면을 통한 수기입력을 이용하여 자료제출
 - 자료 등록 시 등록자료 검토 로직이 내장되어 있어 입력시 입력오류를 검출할 수 있으며, 오류가 해결되지 않는 자료 저장 불가
 - 화면상 입력 중 오류 발생 시 화면상에 오류 메시지 표현

□ 자료 입력 교육을 위해 ODA 통계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 국무조정실은 ODA 통계 제출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매년 ODA 통계 교육을 실시하여 통계 작성지침에 대해 변경된 내용과 입력시스템 활용방법, 작성 시 유의점 등을 안내하고 있음.
 - 또한 ODA 통계 입력을 위한 시스템 이용가이드 책자를 매년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동 가이드에는 입력방법 및 예시, FAQ,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

2. 자료내검

□ 중복, 누락된 데이터에 대한 확인은 통계 취합 이후 국무조정실이 1차로, ODA 주관 정부부처인 외교부, 기획재정부에서 2차로 실시

- 중복된 데이터가 없는지 통계 취합 후 국무조정실이 제출기관별 입력 내용을 확인하며, 이후 중복, 누락된 데이터에 대한 확인은 유·무상원조 주관부처인 외교부, 기획재정부가 각각 담당하고, 최종 데이터 확인은 다시 국무조정실에서 실시

□ 데이터 입력시 시스템상 오류 검증절차 존재(전산내검 : 범위내검 및 논리내검)

- OECD 통계보고 체크리스트 상의 사업분야 및 유형, 정책마커 등 관련 데이터 입력범위를 설정하여 범위 외 자료 입력에 대한 범위 및 논리오류 검증을 진행하여 범위 및 논리 검증 로직이 반영되어 있는 입력데이터에 오류 발생 시 저장처리 되지 않음
- 동일한 검증로직이 엑셀 업로드 시에도 진행되며, 오류 발생 시 오류 메시지 표현되며 오류 발생 건은 저장되지 않음

□ 집계된 자료를 통계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내용

- 입력 자료 오류 및 구축 내용
 - 화면상 입력 중 오류 발생 시 화면상에 오류 메시지 표현

- 오류 발생 시 저장 처리되지 않음

3. 무응답

주요항목 무응답 및 ODA 실적 미기재 대응

- 최초 입력 시 미기재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오류 메시지 안내 및 미기재 사항 입력 완료 후 저장 가능
- ODA 실적 미기재 사항에 대한 확인은, 전산 시스템 입력자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승인한 해당연도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자료 미기재 및 입력사항 이상치를 확인하며, 통계시스템과 별도로 ODA 모니터링 시스템(ODA 사업 관리 화면)을 가동하여 매분기 부처 및 기관의 ODA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바 해당 시스템 입력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자료 미기재 및 부실 기재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 수정요청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국무조정실은 통계 취합 후 통계제출기관별로 당해연도 지출 규모를 확인하여, 차이가 날 경우 담당자 앞 입력내용에 대한 확인 실시

- ODA 실적 미기재 사항에 대한 확인은, 전산 시스템 입력자료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승인한 해당연도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자료 미기재 및 입력사항 이상치를 확인하며, 통계시스템과 별도로 ODA 모니터링 시스템(ODA 사업 관리 화면)을 가동하여 매분기 부처 및 기관의 ODA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바 해당 시스템 입력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자료 미기재 및 부실 기재 내용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 수정요청

Ⅵ.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ODA 통합정보포털(kodaportal.go.kr)을 통해 연도별 ODA 통계를 공표 중
- 통계 산출 주요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하며, ODA 통계자료집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및 OEC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기준시점은 OECD의 ODA 통계 기준에 따라 매 1년 단위
 - OECD의 통계 취합은 매년 2회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각국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약정 및 지출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ODA 지원 실적 보고
 - 1차 취합은 2월 비공식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회의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며, 이 기간은 잠정통계 작성기간으로 각국은 전체 ODA 규모, 양다자 원조 지원액, 특정지역 및 분야에 대한 지원액 등을 중심으로 총계표(Questionnaire on Main ODA Aggregates)를 작성하여 3월 초 OECD 앞 제출
 - 개발재원 통계작업반은 매년 6월 OECD 본부에서 개발재원 통계작업반 관련 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전년도 ODA통계 작성지침을 최종 확정하며, 각 회원국들은 이를 토대로 ODA통계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확정통계 작성기간으로 매년 7월 15일까지 OECD 앞 제출하는 것이 원칙
- 공표시기는 OECD의 ODA 통계 공식 발표 시점에 맞춘
 - 3월 제출한 잠정통계는 매년 4월초 OECD 고위관리회의에서 회람되며, OECD는 이를 토대로 4월 초~중순 공식 보도자료 발표
 - OECD의 ODA 통계 공식 보도 시점에 맞추어 국무조정실, 기재부, 외교부 3개 부처 공동으로 우리나라 ODA 통계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의 ODA 통계치를 보도

2-2. 공표일정

- 국무조정실은 OECD 일정에 맞추어 매년 4월 중순경 ODA 잠정통계를 공표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
 - OECD DAC Newsroom: <http://www.oecd.org/newsroom/>
- 국무조정실은 OECD 일정에 맞추어 차년도 1월 초 전년도의 ODA 확정통계를 공표
 - OECD는 7월 확정통계 자료 수집 후 최종 검토 및 수정기간을 거친 후 차년도 1월 확정 통계치를 발표하고 통계조회사이트에 정보 공개
 - OECD Stat: <https://stats.oecd.org/>

□ 국무조정실은 매년 ODA 통계 발간물 제작 및 대외 공개

○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odakorea.go.kr) > 관련자료 > ODA 발간자료

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주요 개념, 기준, 보고시점 등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OECD 논의에 따라 아래 보고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변경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2018년부터 ODA 통계 개념 중 공여조건인 증여율(일반적으로 국제자본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준보다 얼마나 더 양허적인가) 기준이 변경됨.
 - 기존 : 증여율 25% 이상, (10% 할인율, 수원국 일괄 적용)
 - 변경 : 수원국 소득수준별로 적용 할인율 및 적격 증여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

구 분	적용 할인율	적격 증여율
최빈개도국/저소득국	9%	45%이상
하위중소득국	7%	15%이상
상위중소득국	6%	10%이상

- 2018년부터 보고기준이 순지출(cashflow, 지출에서 회수되는 금액 차감하여 산정) 방식에서 차관의 양허성 수준을 반영하는 증여등가액 방식으로 변경
 - 2017년도 수치 기준, 증여등가액 합계는 순지출 대비 2.3% 감소
 - OECD에서 총 ODA 수치는 증여등가액을 사용하나 분야별, 지역별, 원조유형별 등에서는 순지출 방식의 분석이 필요한 바,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속 보고

3-2. 국가간 비교성

□ 공적개발원조 실적통계는 OECD 규약에 따라 DAC 29개 회원국이 동일한 목적에 따라 ODA 통계를 모두 작성, 보고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은 OECD DAC 통계지침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OECD DAC 회원국 ODA 통계” 작성

○ OECD는 1961년부터 ODA 통계를 공식적으로 취합·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ODA 통계자료 부문에 있어 유일하게 신뢰성 있는 수치로 알려짐

□ OECD에 제공하는 통계자료는 공적개발원조 실적통계와 동일한 바, 미공표 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 주요 제공항목은 ODA 지원국가, 유상·무상원조 구분,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국제기구 앞 ODA 지원액, 국가소득분류별 지원액 등 공적개발원조 실적통계에서 제공하는 항목과 동일함.

4. 일관성

4-1.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전년도 ODA 통계에 대해 다음 해 3월 잠정치가 발표되고 차차년도 1월 확정치가 공표되며, 잠정치와 확정치 차이의 원인은 대부분 제출기관의 입력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매년 ODA통계 이용자가이드 제공과 설명회 개최를 통해 차이를 줄여 나가도록 하고 있음.

5. 일회성 수정

- 공적개발원조 실적통계를 집계하여 OECD 앞 잠정치 제출(3월), 확정치 제출(7월), OECD의 최종 확정치 발표(1월) 순의 집계 및 공표 일정 중 오류 수정은 최종 발표한 달 전까지 가능
 - 7월 확정통계 제출 이후 OECD는 통계 정보에 대해 검증하며, 필요시 개별적으로 해당 국가의 통계 담당부처와 기관 앞으로 수정요청 또는 문의

6. 통계활용 실태

- ODA 통합정보포털(kodaportal.go.kr)을 통해 우리나라 ODA 통계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통계수치 활용이 가능하며, OECD 통계조회 사이트(stats.oecd.org)에서도 동 통계를 그대로 인용하여 활용 중

Ⅶ.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ODA 통합정보시스템 이용가이드와 시스템 운영자매뉴얼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되는 경로
 -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사이트 내 ODA 통계(매년 4월 보도자료 배포)
 - 주요 통계자료 : ODA KOREA 사이트 내 우리나라 ODA 지원실적(상시제공)
 - 주요 통계보고서 : ODA 통계자료집(매년 12월 발간)
 - 통계 DB 및 분석(상시제공)

시스템명	url	제공자료
ODA 통합정보포털	https://kodaportal.go.kr	- 모니터링 및 통계 자료 입력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do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 조 지원규모

2-2. 통계 설명자료 제공

-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사이트 상에 통계 지침, 기준 등 설명자료 게시
 - <http://www.oecd.org/dac/>
 -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
: 통계 상의 각종 용어 정의, 통계 작성 기준 등 설명자료
 - <http://www.oecd.org/dac/development-co-operation-report-20747721.htm>
: OECD DAC에서 매년 발간하는 ODA 통계 보고서
 - <https://stats.oecd.org/>
: OECD에서 관리하는 모든 통계에 대한 조회 사이트로, Development 메뉴에서 ODA 통계
조회 가능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는 대국민 ODA통합정보포털(<https://kodaportal.go.kr>)을 통해 무료로 전체 Micro 데이터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 홈페이지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한 바, 별도의 소요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원조유형별, 지원형태, 국가별, 분야별, 유무상별, 사업실시기관별, 종합현황, 심층분석 등 다양한 포맷과 레이아웃의 통계 제공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의 수집, 입력, 전송,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응답자 비밀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 방법, 법령(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등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및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
- 처리자료과정 : 집계담당자가 집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집계함
- 자료보관과정 : 보고된 원시자료는 관리자만 접근가능하며, 집계된 통계자료는 개인식별 자료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응답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있음

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 자료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취한 조치와 방법

- 공표 자료의 경우 식별가능 조사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바 원조유형별, 지원형태, 국가별, 분야별, 유무상별, 사업실시기관별 등 모든 통계데이터 제공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의 수집, 처리 및 보관과정에서 유실, 유출,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방법, 법령(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7조(홈페이지 등 공개용 웹서버 관리대책) 등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및 공개용 웹서버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

Ⅷ.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현재 통계 작성 취합 및 작성은 국무조정실 담당

- 국무조정실은 통계 작성 기획, 자료수집 및 보고, 자료처리, 결과분석 및 공표 등 통계 실무 전반을 처리
- 우리나라 ODA 체계 상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한국 ODA의 총괄 및 조정기구이며,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가 위원회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ODA 통계를 수집하는 시스템인 ODA 통합정보포털의 운영은 국무조정실이 수행하고 있음.

2.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통계 품질 관리 및 개선

- ODA 통합정보포털 고도화('20년~) 사업 진행을 통해 시스템의 보안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통계 데이터의 시각화 디자인 향상

IX.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OECD DAC은 ODA 통계 관련 정의, 분류기준, 작성방법 등을 공시하며 DAC 회원국들은 이 기준에 맞추어 ODA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사이트명	내용	주소
DAC Glossary of Key Terms and Concepts	주요 개념, 용어 정의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data/dac-glossary.htm
Introduction to ODA	ODA 정의와 역사 정리, 시각화 분석 제공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standards/intro-to-oda.htm
Data Visualisations	분야별, 지역별, 주요이슈별 등 각종 시각화 자료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atavisualisations/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29개 DAC 회원국은 모두 OECD 통계지침에 따라 ODA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음(회원국 정보: <http://www.oecd.org/dac/dacmembers.htm#members>)

3. 기타 문헌

- 동 ODA 통계는 OECD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유일한 개발도상국 앞 원조자금 관련 통계로, 각종 국내외 보고서 및 문헌 등에서 활용되는 수치임.
- OECD DAC 발간자료 사이트: <http://www.oecd.org/dac/latestdocuments/>